

日帝侵略以後부터 1960年代初까지의 韓方醫療制度 變遷史에 관한 考察

嶺 重 完

目 次

I. 序 論

II. 日帝下 受難期の 韓方醫療制度

1. 日帝侵略과 同濟醫學校의 設立
2. 大韓醫士會의 結成
3. 醫生制度和 韓醫學抹殺政策
4. 按摩術針術 灸術營業取締規則의 公布

III. 解放後 萌芽期の 韓方醫療制度

1. 韓醫師 制度의 創立
2. 大韓韓醫師協會의 設立
3. 韓醫科大學의 設立
4. 針灸士法의 廢止

IV. 結 論

參考文獻

I. 序 論

韓醫學은 檀君神市時代부터 傳承된 民族固有醫學에 漢土의 醫學이 流入되어 學術的體系를 구비하였고, 그후 數千年의 歷史를 綿綿하게 繼承해 오면서 自主性を 지닌 民族傳統醫學으로 土着化되었으며, 國家의 유일한 醫學으로서 國民保健을 위한 醫療施惠를 全擔해왔다.

그러나 19C 後半에 이르러서는 西洋醫學의 流入으로 兩大醫脈을 形成하면서 沈滯의 기미를 보이던 차에 日帝侵略에 의한 植民地化 政策으로 受難期에 접어든다. 또한 36年間 日帝下의 韓醫學 抹殺政策으로 韓方醫療制度는 廢止되고 말지만 1945年8月15日 祖國의 解放으로 回生の 기쁨이 잡히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政府樹立後 國民醫療法制定時 洋方醫療界의 한의사 제도화 저지 책동으로 韓方醫療制度는 存廢의 岐路에 서게 되니, 이에 韓方醫療界는 民族的 良心에서 表出된 學問守護意志로 맞서서 1952年 9月25日 法律第221號로서 韓醫師制度를 탄생시

켜 韓洋方二元制의 醫療體系를 存置시킬수 있게되었다.

그러나 寒醫師制度가 創立된지 36년이 지난 現今의 韓方醫療界는 日帝下 受難期에 못지 않은 多局面的인 醫權侵害 樣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本 考察에서는 日帝侵略 以後부터 1960年代初 까지의 韓方醫療制度變遷史를 살펴 봄으로서 民族醫學의 守護精神을 再整立하고자 한다.

II. 日帝下 受難期이 韓方醫療制度

1. 日帝侵略과 同濟醫學校의 設立

日本은 帝國主義에 便乘하여 1875년에 軍함 雲陽號로 강화도를 侵犯하니, 이에 우리나라는 砲擊으로 맞섰다. 日帝는 이를 구실로 하여 1876년에 丙子修好條約의 체결을 強行함으로서 日帝의 侵略은 始作되었다. 以後 日帝는 1877年 부터 日本人居留民의 健康을 보호한다는 明目으로 各 開港地마다 洋方病院을 設치함으로서 自國의 西洋醫學 일변도의 醫療政策을 우리나라에서도 本格的으로 實施하고자 하였다.

그후 1894年 甲午更張이 단행되었으나, 이는 自主的인 改革이 아닌 日帝의 侵略 野慾이 內包된 改變이었다.

Mckenzie는 이점에 다음과 같이 紹介하고 있다.

“... (前略) ... 日本側은 即時로 王命을 얻어서 國內에 發生하는 大小事를 審의하기 위하여 會議體를 창設하였다. ... (中略) ... 日本人이 採用되어 일하게 되었다. 그들은 경험도 적고 무책임한 人間들이었다. ... (中略) ... 그들은 無限定 法規를 만들어 내서 새 法命을 공포하기 위하여 온 宗 일을 허비하는 것이었다. 어떠한 것은 淺俗하고 어떠한 것은 이 나라에 있어서 오래되고 重要한 것을 打破해 치우는 것이기도 하였다. (後略) ...^{註1)}

이와같은 帝國主義的 侵奪에서 부터 醫療行政 및 醫學教育 制度가 西洋醫學일변도로 改革되었다. 1899年 3月에는 勅令 第7號인 醫學校管制를 公布하여 官立醫學校를 設立하였다. 그리고 同年 7月에는 學部令 第9號인 醫學校規則를 發表하여 16個의 全 學科目을 西洋醫學만으로 配定하였으니 東洋醫學校設立에 관한 管制가 따로 制定되지 않는 한 西洋醫學教育만 存在케 된것이다. 이는 學問의 排出口를 封鎖해버린 韓醫學 抹殺政策의 첫 段階라 할 수 있겠다. 1905年 乙巳保護條約이 체결되자 相國의 統治權은 日帝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1906年 9月에 日本統鑑 伊藤은 既存의 度濟院(東西醫學 併行制 實施 擔東醫學 爲主)를 官立醫學校와 統合하여 大韓病院을 開說하고, 日本人 醫師를 청빙할 것을 強요 하였다. 그리고 1907年 3月에 勅令 第9號로 大韓醫院管制를 公布하여 西醫單一制의 診療를 實施함으로써 東醫診療는 管制에서 廢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韓民族의 半萬年 歷史와 더불어 同苦同樂을 함께 해온 韓醫學이 日帝의 侵略으로 일 순간에 死藏될 수는 없는 것이기에 東醫學界의 뜻있는 人士들은 民族의 良心으로 學問守護意志의 기치를 드높였다.

醫學校 管制公布 5年後인 1904年 4月에 當時 侍從秉典醫였던 張 容駿, 內部衛生局長이었던 洪 哲普, 典醫補였던 金 炳 등은 高宗께 東醫學을 專門으로 하는 學校의 新設을 請願하였다. 西醫學보다 東醫學에 愛着心이 더 컸던 高宗은 이를 許

話하여 1905년 4月 부터 東醫學 教育이 시작되었는데, 本校의 講師로는 都教授에 金 永勳, 副教授에 田 光玉이 選拔되었고 學生數는 40餘名이었다. 同濟醫學校가 1年間 유지되어 오던 中 度支部로 부터 경비의 支出이 中斷되기에 이르자 高宗은 私用財인 明禮宮의 親用金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07年 6月の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高宗이 강제로 退位됨에 따라 同濟醫學校는 開校3年 만에 閉校되고 그후 大韓醫學習所 또는(構習院)로 改編되어 微微 하나마 東醫學 教育을 繼續 實施하였다.

2. 大韓醫士의 結成

同濟醫學校가 財政 으로 閉校됨으로서 民族醫學이 다시금 沈滯危機에 직면하자 韓醫學界의 뜻인은 人士들이 다시금 糾合하였다.

1909年 8月に 金 永勳, 趙柄瑾(以上서울), 田 光玉(黃海道), 張 起學(平安道), 林 燦東(江原道), 李 喜豐(忠南道), 徐 丙琳(慶北道), 林 炳厚(慶南道) 등이 發起하여 全國東醫學界를 糾合하는 團體를 組織할 것을 決意하고, 同年 10月 26日에 大韓醫師會를 結成하였다. 이때 任員으로서 會長에는 洪 哲普가, 副會長에는 張 容駿이, 幹事長에는 李 鶴浩가, 評議長에는 徐 丙孝가, 講習所長에는 李 峻奎가 各各 推戴되었고, 全國各地의 170餘名에 이르는 人士가 會員으로 加入하였다.

大韓醫士會는 1910年 8月 2日에 東醫學의 再起와 傳承을 위하여 東西醫學講習所를 開設하였다. 同講習所는 同濟醫學校의 뒤를 이은 것으로 洋醫學의 教育도 實施하였으니, 東醫學講師로는 朴 準承(前典醫), 徐 丙孝(典醫)兩人이, 西醫學 講師로는 安 商浩(前醫學校教官), 劉 會泌(醫學校教官), 兩人이 各各 擔當하였다.

그러나 開講 1個月도 채못된 1910년 8月 29日에 庚戌國恥로 因하여 本 講習所는 1913年 12月까지 滿 3年の 短命으로 閉所되었다.

3. 醫生制度和 韓醫學 抹殺政策

1910年 8月 庚戌國恥以後 日帝는 植民地 政策으로 祖國을 蹂躪하면서 韓醫學抹殺政策 또한 本格的으로 強行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日帝는 祖國侵略以來 醫學校管制(1899年3月 勅令 第7號), 醫學校規則(1899年 7月 學部令 第9號), 大韓醫院管制(1907年3月, 勅令 第9號)등을 公布하면서 일관된 韓醫學 抹殺政策을 試圖해왔지만, 民衆醫療에 이르기까지의 完全廢止는 實現시키지는 못하였다. 이는 韓醫學이 韓民族의 生活속에 뿌리깊게 자리잡혀 있고, 韓方醫療界의 뜻있는 人士들이 危機에 처할때 마다 學問守護意志를 확고히 表出하였으며, 醫療施惠上 供給者로서의 醫療人이 過不足한 現實때문이라 하겠다.

그래서 日帝는 韓醫學의 完全廢止를 위한 漸進的인 解決策으로 1913年에 醫生規則을 公布하니 韓醫를 醫生으로 格下시켜 醫業에 從事케 한것이다.

醫生規則은 모두 8條附則으로 成立되어 있는데 醫生免許 取得要件은 다음과 같다.

一. 永年免許

- 朝鮮人으로서 20歲 以上인 者
- 本令施行前 朝鮮에서 2年이상 醫業을 行한 者

以上の者が本令公布後 3個月 以内に 警務總長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申請하면 適格者로 認定될 시는 永年免許가 발급됨.

二. 限地免許;

申請期限 終了後에는 醫生에게 3年이상 就業한 經歷證明書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그의 裁量에 依해 5年 以内 期限의 限地免許만 發給됨.

이와 같이 醫生規則은 醫生의 後續인 排出를 制限해 두었으니 韓醫學의 漸進인 消滅을 冀圖해 왔다고 볼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각 醫學部 및 專門學校에서 배출된 洋醫의 數가 增加하자 1944年 8月 21日에는 朝鮮醫療令을 制定하면서 醫生規則 마저 廢止시키니 韓醫學 抹殺政策의 終止符를 찍는 듯한 잔혹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4. 按摩術, 針術, 灸術 營業取締規則의 公布

日帝는 漸進의이고도 一貫된 韓醫學 抹殺政策을 強行하던 중 自國의 西醫一元制의 副産物인 類似醫療業에 관한 새로운 規則을 發布하니, 醫生規則이 公布되고 1年後인, 1914年 10月 29日에 朝鮮總督部警務總監部令 第10號로 按摩術, 針術, 灸術營業取締規則이 制定되었다. 이들 類似醫療業者의 免許取得要件은 다만 보통학교 1年을 修了한 者(1923年, 10月26日 以後는 보통학교 3年修了로 變更)로 하고, 按摩術, 針術, 灸術 等の 營業을 同一한 사람이 兼業을 하여도 무방하며, 단지 免許証만 各別히 交付하였다. 그리고 洋醫에게도 그 資格으로서 按摩術, 針術, 灸術의 業務를 別途의 免許없이 許容하였고, 다만 이것을 傳業으로하여 本醫務를 行하지 않을 때는 別途의 按摩, 針, 灸術의 免許가 要求되었다.

日帝의 韓醫學 抹殺政策의 後續으로 이와 같은 狀況이 展開됨을 現今에서 바라보면 韓醫學 末路를 보는 듯 하다.

아름든 이 제도는 장치 韓方醫療界의 醫權을 深刻하게 侵害하는 針灸士, 按摩士界의 突然變異의 出生申告인 셈이다.

Ⅲ. 解放後 萌芽期의 韓方醫療制度

1. 韓醫師 制度의 創立

日帝의 韓醫學 抹殺政策의 一環으로 韓醫師가 醫生으로 格下되어 겨우 命脈을 이어 오던 韓醫學界는 祖國의 解放과 더불어 復活運動을 開始하였다.

1945年 11月에는 朝鮮醫師會를 結成하였고 1947年 12月에는 杏林財團 東洋大學을 正式으로 認可받는 한편 韓醫學의 地位復舊를 위하여 朝鮮醫師會를 中心으로 會長 李炳天外 朴鎬豐, 朴性洙등이 앞장 서 많은 活動을 展開해 왔다.

1948年 8月 15日에 大韓國民 政府가 樹立되면서 法律 第1號로 政府組織이 公布되었고, 美軍政法令 第64號(1946年 3月 29日)로 設立된 保健厚生部는 社會部의 한 保健機構로 縮小改編되었다. 當時 保健局에는 醫務課, 保健課, 藥務課, 防疫課, 看護事業課 등과 함께 韓方課가 新設돼 韓醫學의 再建이 本格化되는 듯 하였으나, 1949年 7月에 政府機構改編으로 韓方課가 廢止됨으로써 保健醫療 行政을 洋醫師

出身만이 傳擔하게 되었다.

制憲國會가 開會되자 保健部(1949年 3月 社會部로부터 獨立됨)는 倭政醫療會를 廢止하고 大韓民國 國民醫療法을 새로히 制定하고자 同法를 國會에 提出하면서 醫療法 第1條 總則의 醫療人規定에 醫師 齒科醫師 制度만 두고 韓醫師를 排除하려고 하였다 이는 事實上 韓醫師 制度를 廢止한 洋醫單行案이었다.

日帝도 一時에 廢止시키지 못한 民族醫學을 解放된 政府의 保健主務部가 일순간에 廢棄하려고 하였으니 國恥民辱의 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保健部 案이 國會 社會保健分科案委員會에 提出되자 全 韓醫學界는 크게 反發하였고, 全國各地에서 12萬通에 이르는 國民陳情書가 殺到하였으며, 韓醫學界에 唯一한 代辯者였던 趙 憲永 議員의 強力한 反證이 있는 等으로 保健部가 提出하였던 洋醫單行案은 廢棄되었다.

第2代 國會 當時는 6.25動亂으로 政府가 釜山으로 遷都하였으므로 國會또한 釜山에서 開會되었다.

二代 國會에서는 國民醫療法 制定에 關하여 國會 社會保健分科委員會의 案과 國會議員 韓 國源 外 80人이 제안한 案이 上程되었다. 韓 國源 外 80人의 案은 洋醫學界의 主張을 反映한 것이었다. 當時의 國會는 오늘날과 같은 分科委員會中心制와는 달리 國會本議會中心制였으므로 이와 같은 2個의 立案이 同時에 本會議로 上程된 것이다. 不幸하게도 當時 韓醫學界는 國會議員의 발기로 提案을 할 만큼 入法府나 行政府에 영향력을 行事할 수 없었으므로 社會保健分科委員會에서 作成할 國民醫療法案에 韓醫師 制度가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하였다. 이 때 洋醫界는 크게 두가지로, 그 첫째는 韓醫가 排除된 洋醫單行의 一元醫療法을 推進하는 것이고, 그 둘째는 첫째 計略이 여의치 않으면 韓 國源議員 外 80人의 提案을 관철시켜 洋醫보다 格下된 韓醫制度를 實現시키는 것 이었다. 이는 時代적 良心을 저버리는 兩面性의 發路라 할수 있겠다.

이에 대해 釜山 韓國醫藥會의 李 羽龍, 尹 武相, 禹 吉龍, 權 義壽, 鄭 源熹 等 五人同志會는 韓醫師法 制定을 위하여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이들 五人同志會는 韓醫學 存廢의 危機를 直感하고 곧 國會社會保健分科委員會에 韓國 醫藥會 名의로 證言申請書를 提出하니, 이에 대해 社會保健分科委員會는 먼저 洋醫界의 證言을 들은 뒤 다음날 韓醫界의 證言을 듣기로 決定한 사실을 通報해 왔다.

當時 社會保健分科委員會 會席上에서는 尹 武相, 權 義壽, 李 羽龍, 鄭 源熹 등 四人順으로 韓醫界의 證言이 있었다.

그 때 鄭 源熹의 證言 一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前略) ……侵略者 倭政이 半世紀동안 우리 民族의 精神的, 物質的, 生命까지 모든 것을 유린하여 착취하였던 것이니 解放된 獨立은 半世紀동안 倭政에게 유린되며 착취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아 우리 것으로 還元시켜 育成發展시키는 데에 解放獨立 國家의 目的과 意義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民族의 傳統醫學이요 우리 民族문화의 正수인 한의학이 우리민족 文化를 抹殺하는 倭政侵略 政策下의 醫療令에 발 묶여 半世紀동안 신음하였던 것이니, 이제 解放國家인 우리나라 國民醫療法을 만드는 歷史의 전환기에서 倭政醫療令이 漢醫를 속박 하였던 法條項의 쇠사슬을 풀어 주어 民族傳統醫學인 漢醫學을 育成發展 시키는 즉, 漢醫洋醫가 공존하는 二元制의 國民醫療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明白한 國家民族觀의 正義요

使命일 것입니다. …… (後略) …… ”^{註2)}

五人同志會의 證言으로 마침내 대다수 社會保健分科委員會 委員들의 感動과 理解를 얻게 되어 當初 예상되었던 洋方單一制는 修定되고 韓洋醫二元制 案을 成案케 되었다. 그런데 다만 呼稱에 있어서는 洋醫는 醫師로 韓醫는 漢醫師로 「士」字의 格差를 둔 案을 本會議에 提出하였다.

그 當時 保健部에는 長, 次官 局, 課長 級 人士가 모두 洋醫出身이었음을 감안할때 韓洋醫二元制의 國民醫療法案이 社會保健分科委員會를 거쳐 本會議에 上程된 것은 千辛萬苦끝의 多幸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또 하나의 關門인 國會 本會議의 審議와 表決이 남아 있었다. 이에 五人同志會는 本會議 上程 첫날 韓國醫藥會 명의로 된 建議書와 書簡을 동봉하여 國會議員들에게 전달 하였다. 이때의 建議書의 內容중 呼稱問題에 觀한 一部分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前略) …… 倭政醫療令에서 洋醫는 醫師, 漢醫는 醫生이라 呼稱함으로써 漢醫의 資格을 格下差別한 要因이 되었던 것이오니 … (中略) …… 歷史의 전환기에서 획기적으로 韓洋醫 漢洋醫 同等權의 二元制 國民醫療法을 制定함에 있어서는 同等한 呼稱으로 洋醫는 醫師, 漢醫는 「士」字가 아닌 漢醫師로 하여야 할 것은 常識의 問題가 아닐까 하오니 … (後略) …… ”^{註3)}

五人同志會의 建議文은 大多數 國會議員들에게 많은 同調와 呼應을 얻게 되었다.

本會議가 開始되자 國會는 社會保健委員會에서 上程한 二元制 案을 놓고 이를 贊成하는 韓醫陳과 反對하는 洋醫陳으로 兩分되어 맹렬한 公방전이 展開되었다. 몇일 을 두고 계속된 本會議의 討議는 議政壇上에서 끝나지 않고 院外까지 번져서 大韓醫師會에서 韓醫는 非科學的이고, 선진국에서는 二元制 醫療法이 없다는 要旨의 聲明書를 釜山 二大日刊紙上에 發表하였다. 이에 五人同志會는 大韓醫藥會 명의로 된 強硬한 反駁 聲明書를 同日刊紙에 掲載하였다. 이와 같이 前後로 계속 되었던 建議書, 聲明書, 反駁文 등은 大多數 國會議員들의 民族的 良心과 正義에 호소 되었다.

本會議 第二會議에서 韓洋醫를 각각 옹호하는 兩陳의 論戰끝에 다음의 案들이 表決에 부쳐져 通過되었다.

첫째: 漢醫師의 「士」字를 「師」로 再修正한 案.

(社保分委의 修正案)

둘째: 診療所를 漢醫院으로 修正한 案.

(金 翼基 議員案)

셋째: 漢醫師의 資格부여에 있어 15條 1項과 같은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醫學 또는 齒科醫學을 專攻하는 學校를 卒業한 者”에 漢醫學을 포함시키는 案.

(金 翼基 議員 案)

以上과 같이하여 韓醫師 制度를 存置케 하는 醫療法(法律 第221號)이 1952年 9月 25日에 歷史적으로 公布됨으로서 民族醫學은 復活의 새 章을 열었던 것이다.

韓醫師制度가 制定되기 까지 韓醫學界의 醫權守護를 위한 活動도 韓醫學史에 남을 일이지만 五人同志會의 犧牲과 努力또한 높이 기릴 만한 일이다. 그 當時 이들 五人同志會 中 禹 吉龍, 權 義壽 등 2人是 漢藥種商이었고, 尹 武相, 李 羽龍, 鄭 源熹 등 3人是 소위 限地醫生이었다.

2. 大韓醫師協會의 設立

1952年 9月 25日 法律 第221號로서 公布된 國民醫療法 第53條에 의거하여 中央漢醫師會를 設立하기 위하여 同年 11月 25日 釜山에서 韓醫界 全國代議員 68名 中 48名이 參集하여 創立總會를 개최 하였다. 同創立總會에서는 會則를 制定함과 同時에 中央漢醫師會를 設立하였다.

同 創立總會에서 任員陳으로 名譽會長에는 金 永勳을 會長에는 李 羽龍을 副會長에는 朴 鎬豐, 趙 忠熙, 崔 海鍾등을 理事에는 權 義壽, 尹 武相, 鄭 源熹, 朴性洙, 朴在奭, 李 潤秀, 姜 昌昊, 金 相毫, 安 秉德, 金 相旭 등을 監事에는 朴 千來, 尹 影漢, 許 湊등을 選出하였다.

當時 各 市道別 議員數는 서울 特別市 149名, 京畿道 158名, 江原道 75名, 忠南道 190名, 忠北道 128名, 全南道 90名, 全北道 0名, 慶南道 322名, 慶北道 206名, 濟州道 3名 等으로 總會員數는 1492名 이었다.

創立當時는 6. 25動亂으로 諸般秩序가 정비되지 못하였던 關係로 傘下 各 地方 漢醫師會의 組織를 完了치 못하여 臨時 各 市道代議員으로 구성하여 結成하였으며, 全南, 濟州道 漢醫師會도 未組織으로 參席하지 못 하였다.

大韓漢醫師會는 1952年 12月 12日 字로 國民醫療法 第55條에 의거하여 保健社會部長官에게 會設立認可 申請을 하였고, 同年 12月 16日 指令 第4435號로서 認可를 얻게되어 法定團體로 認定받게 되었다.

1953年 保健部가 서울로 復歸되자 同年 10月 2日에는 會長 李 羽龍 外 數人으로 구성된 幹部會議결과 會館을 서울 特別市로 韓醫師會館內에 併設하기로 결정하고, 同年 12月 2日 諸般書類를 李 羽龍 會長 入會下에 朴 性洙 서울시 韓醫師 會長에게 移管시켰다.

1959年 5月 8日 京畿道廳會議室에서 總代議員 75名 中 55名이 參席한 가운데 第4回 定期總會를 개최 하였다. 同總會에서는 大韓漢醫師會를 社團法人으로 改編組織할 것을 決議하고 新定款을 制定하였다. 그리하여 1959年 11月 18日에 醫療法 第59條에 의거 하여 保健社會部 長官의 認可를 申請하였고, 同年 12月 11日에 社團法人 大韓漢醫師協會로 認可를 받았다.

1962年 3月 20日 國民醫療法 改定法律인 新 醫療法이 法律 第1035號로 公布됨으로서 同法 第58條에 의거하여 中央醫療團體는 單一法人으로서 中央集權制가 法制化되었다. 이에 1962年 9月 20日 篇6回 定期代議員總會를 개최하여 改定醫療法에 의한 定款으로 大幅改定을 하였으니 그 特徵은 다음과 같다.

- 醫療法 第58條 1項에 의하여 中央會 관장으로 구성한다.
- 醫療法 第58條 3項에 의하여 漢醫師는 中央會會員이 되어야 한다.
- 醫療法 第60條에 의하여 中央會에는 서울 特別市및 各 道支部를 設치하고 필요에 따라 市郡分會를 구성한다.
- 中央會는 公法人으로 하고 醫療法에 定한 바 民法 中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

用한다.

그리고 1962年 10月 4日에는 改定 定款의 認可를 위해 保健社會部長官에게 認可申請을 하였고, 同年 11月 2日에 保醫 第4646號로 認可되어 新定款이 發効되었다. 1962年 5.16 軍事革命政府는 漢醫師의 資質向上과 二元制 醫療制度의 健全적인 해결를 목표로 하여 韓醫師의 國家考試 應試資格을 國公立韓醫科大學을 卒業한 者로 하는 內容의 醫療法 改正을 시도 하였으나, 東洋醫科大學의 閉鎖危機를 直感한 韓醫界의 거센 반발로 本法改正의 시도는 挫折된다. 그 후 無醫面의 解消策으로 역시 革命政府에서 韓醫師動員令을 公布하여 現代的 豫防醫學을 履修시킨 뒤 無醫面에 保健支所長으로 배치하여 임무를 수행케 하였으나 關係法 未備로 中途 廢止되고 말았다.

1962年 9月에는 保健社會部로 부터 40歲 미만의 淸壯年韓醫師에 대한 補修教育 示達이 있었다. 이에 大韓漢醫師協會는 各 支部와 연락하여 教育을 實施하고 韓醫師의 質的 向上을 期하였다. 當時 第1回 補修教育 應모자는 620名이었다.

이와 같이 二元制 國民醫療法 施行 10年 가까이 동안 韓方醫療制度는 固守되어 왔지만, 韓方醫療政策에는 획기적인 實顯을 찾아보기 어렵다.

解放後 韓醫學의 萌芽期라고 할 수 있는 이 時期에 國家政策的 次元에서의 育成發展策은 全無하였던 것이다. 이에 大韓漢醫師協會는 古色이 蒼然한 學問을 現代의 生理에 부합되도록 重修하는 것이 時代的 要請이요, 緊急을 要한다는 取指에서 學會를 組織하기에 이르니, 1962年 9月 20日에 大韓漢醫師協會 理事및 市道會長 連席會議에서 新定款 等 42條 第5項에 의한 學會規定을 通過시켰다. 그리고 1963年 4月 1日 第7回 定期總會에서는 特別會計로 된 學會豫算이 通過되었다. 또한 1963年 4月 8日에는 協會長 鄭 炅模에 의하여 學會任員 名單이 發表되었으니 理事長에는 崔 奎晚을, 副 理事長에는 趙 明聖을, 理事에는 韓 東錫, 金 基澤, 權 寧俊, 李 相治, 金 定濟, 朴 一洪, 黃 鐘按, 李 範成, 張 載浦 等を 任命하였다. 이와 같이 大韓漢醫師會가 發足됨으로서 本會는 大韓漢醫師協會의 事業을 推進시키는 機關으로서 自主的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特別會計에 의한 豫算으로 學會를 運營하였으며, 韓醫學을 保存, 育成, 整理 하여 現代化내지 生活化 시킴과 동시에 韓醫師의 權威를 確保 宜揚함을 目的으로 하였다.

3. 韓醫科 大學의 設立

解放後 朝鮮醫師會는 1945年 12月 24日에 總會를 개최하고 教育機關의 設立을 決議하고 그 준비로 東洋醫學專門學校 既成會를 구성 하였다. 그리고 美軍政 當時 專門學校制 廢棄에 따라 東洋醫學專門學校 既成會를 東洋醫學大學 期成會로 改稱하였다. 1947年 9月 16日에는 財團法人 杏林學園의 첫 理事會가 개최되었고, 同年 12月 31日에는 杏林學園 東洋大學館의 認可를 얻어 1948年 3月 24日 부터 서울 市 馬場洞의 臨時校舍에서 開講하였다. 그리고 1950年 6.25 動亂이 발발하자 杏林學園 東洋大學館은 釜山市 東大新洞의 校舍에서 講義를 繼續하였다.

1952年 9月 25日에 國民醫療法이 制定公布됨에 따라 杏林學園 東洋大學館은 서울韓醫科大學으로 昇格되었다. 그리고 1955年 3月에는 藥學科를 併設하고 東洋醫藥大學으로 改名되었다.

1957년에는 서울 市 成北區 敦岩洞에 附屬漢醫院을 開設하여 教育和 臨床의 一體

화를 기 하였다. 1964年 1月 東洋醫藥大學은 修學年限이 六年制로 전환됨으로서 東洋醫科大學으로 改稱하였다. 1965年 9月 東洋醫科大學 漢醫學科는 慶熙大學校 醫科大學 漢醫學科로 改編되었다.

4. 針灸士法の 廢止

解放後 美 軍政 當時 우리나라와 日本은 新規 針灸士 養成制度가 中斷되는 即, 1946年 4月 美軍政廳은 保健厚生部 훈령으로 按摩術, 針術, 灸術의 營業取締規則의 効力を 停止 시켰다. 그런데 1951年 國民醫療法 第59條로서 針士, 灸士, 按摩士 및 接骨士에 關한 制度가 主무부령으로 制定되었고, 保社部는 1960年 11月 28日에 保社部 令 第56號로 類似醫療業者 令을 設定하였다. 또한 동시에 按摩士, 針士, 灸士 및 接骨士의 資格 試驗을 規定하였다. 1962年 7月에는 國家再建最高會議에서 國民醫療法 第59條를 삭제하고, 醫療法 附則經過規定(針士, 灸士, 按摩士 및 接骨士의 既得權者에 對한 管理規定)를 設定함으로써 事實上 針灸士 制度는 廢止되었 다.

그리고 이에 反對하여 盲人들이 制度의 復活을 강력히 주장하자 1963年 12月 12日 保健社會部는 按摩士 許可에 關한 規定을 設定하였다.

이와 같이 針灸士法이 浮沈을 거듭하는 동안 韓方醫療界는 장차 일어날 針灸士則의 強力하고도 持續的인 針灸士制度 復活推進策動을 豫感하지 못했다.

Ⅳ. 結 論

以上の 考察을 通해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日帝는 漸進的이고 一貫된 韓醫學 抹殺政策으로 民族醫學을 死滅시키려고 하였다.
2. 日帝의 按摩術, 針術, 灸術 營業取締 規則에서 一時의 無分別한 醫療政策은 醫療體系에 持續的인 혼란을 惹起시킴을 알 수 있었다.
3. 韓醫師 制度의 誕生은 民族醫學으로의 復活, 二元制 醫療體系의 確保, 同等한 醫療人으로서의 地位復舊, 韓醫學 教育制度의 昇格 等の 意義를 지님을 알 수 있었다.
4. 韓醫師法 制定後 民族醫學에 對한 國家政策의 未備로 韓醫學의 發展時期를 遲滯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5. 五人同志會와 같은 一當百의 醫權守護意志가 民族醫學을 繼承 乃至 發展시키는 原動力이 됨을 알 수 있었다.

註)

1) 震禮學會. 韓國史. 第六卷 現代篇. P 254-255

2) 鄭 源熹 解放後 漢醫學의 발자취. 1984年 7月 31日 字 漢醫師協報. 四面

3) 鄭 源熹 解放後 漢醫學의 발자취. 1984年 8月 31日 字 漢醫師協報. 六面

參 考 文 獻

1. 金 斗鍾：韓國醫學史. 探求堂. 서울. 1981.
2. 沈 昌基：漢醫師協會略史. 漢醫師協會. 서울. 1970
3. 李 鍾馨：晴尚醫鑑. 成輔社. 서울. 1984.
4. 震禮學會：韓國史. 乙酉文化社. 서울. 1963.
5. 金 演洙：制度的 側面에서 본 漢醫學의 發展方向. 漢醫師協報.
1984. 9. 15-11. 15
6. 金 勛：光復後 漢醫師法制定의 醫學史的 意義. 漢醫師協報.
1984. 5. 15. -6. 15.
7. 金 勛：民族文化와 韓醫學. 韓醫師協報.
1987. 5. 10-5. 31.
8. 鄭 源熹：解放後 漢醫學의 발자취. 漢醫師協報.
1984-6. 30-10. 15.
9. 表 天根：同濟醫學校의 醫學史的 意義. 漢醫師協報
1984. 3. 31.